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26년 9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년 8월 31일, 포항시장

2) 회부일자 : 2026년 9월 1일

3) 상정일자

❍ 제33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6. 9. 11.) 상정·질의답변·토론·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손의곤 재정관리과장)

1)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함.

2) 주요내용

사업명	소재지	구 분	지목/층수	취득면적(㎡)	총사업비(백만원)	취득사유	사업부서
강사리항 어촌스테이션 건립(안)	포항시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172-2 일원	건 물	1동/2층	210	1,172	신축	어촌활력과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건립(변경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수평리 53-4	건 물	1동/1층	150	862	신축	어촌활력과
구평리항 해녀문화센터 건립(변경안)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2-11 일원	건 물	1동/2층	500	2,571	신축	어촌활력과
포항시 치유농업센터 구축(변경안)	포항시 북구 흥해읍 매산리 309-1 일원	건 물	1동/1층	330	1,800	신축	농촌활력과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공유재산관리계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김경희)

❍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제10조의2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으로써, **「강사리항 어촌스테이션 건립(안)」 등 4건**으로 제출되었음.

❍ 각 안건별로 살펴보면,

1 「강사리항 어촌스테이션 건립(안)」

- 인구 감소 시대 어촌의 정주 가치를 높여 지역 주민의 유출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된 '어촌·어항재생사업' 「강사리항 어촌신활력증진사업(유형2)」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 사업위치는 남구 호미곶면 강사리 172-2번지 일원으로, 건축 연면적 210㎡에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1억원, 사업기간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음.
- 본 사업계획은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사리에는 고령화 및 공간적 여건으로 공공복지시설과 어업관련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평소 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사업추진이 된다면 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 사업 초기단계인 만큼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어촌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 마련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공동작업장 건립(변경안)」

- 인구 감소 시대 어촌의 정주 가치를 높여 지역 주민의 유출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된 ‘어촌·어항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 당초 사업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53-1번지 일원으로, 건축연면적 620㎡에 지상 2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21억원,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음.
- 본 계획안은 제327회 정례회(2025년 12월)에서 원안가결된 계획으로, 당초 건립 예정 부지가 구평리 물양장과 연접해 있어 어구 적재·하역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위치를 변경하였으며, 변경 건립 예정 부지 면적이 축소되어 당초계획이었던 어촌스테이션은 해녀문화센터 신축 예정 부지로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사업취지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향후에는 계획 수립시부터 실제 사용주체인 지역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구평리항 해녀문화센터 건립(변경안)」

- 어촌의 정주 가치를 높이고 구평 해녀문화사업 및 어업 환경 개선을 통해 해녀문화 보전 및 신규해녀 유입 등을 통해 주민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 당초 사업위치는 남구 구룡포읍 구평리 22-1번지 일원으로, 건축연면적 330㎡에 지상 1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15억원,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음.
- 본 계획안은 제327회 정례회(2025년 12월)에서 원안가결된 계획으로, 당초 건립 예정 부지 매수 협의 과정에서 인근 사유시설 소유자의 동의가 불가하여 위치를 변경하고, 기존 구평리항 어촌스테이션 사업과 연계하여 해녀문화센터와 어촌스테이션 기능을 통합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사업취지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당초 계획 수립시부터 부지매입 가능여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④「**포항시 치유농업센터 구축(변경안)**」

- 농업·농촌 자원 활용 및 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 치유농업 산업의 체계적인 확산과 경북 동부권 치유 서비스 거점기관 육성으로 시민의 힐링 휴식공간 제공 등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당초 사업위치는 북구 흥해읍 매산리 36-1번지 일원으로, 건축연면적 300㎡에 지상 1층 규모로 사업비는 13억원, 사업기간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계획되어 있음.
- 본 계획안은 제327회 정례회(2025년 12월)에서 원안가결된 계획으로, 당초 건립 예정 부지 매수 협의 과정에서 소유자의 매매의사 철회로 인해 위치를 변경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 사업취지 및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나, 당초 계획 수립시부터 부지매입 가능여부,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변경으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당초 대비 사업비가 50% 증가(5억원 증)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의 요지 : 생 략

5. 토론의 요지 : 없 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